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법」 및 하위법령 전부개정(2014.07.15.)과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2014.05.14 및 2014.10.20) 내용에 맞추어 근거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 추가적으로 점용허가대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점용물만 규정하고, 도로법 시행령 내용과 동일한 점용허가 대상을 삭제하며, 서울시 조례를 반영하여 전통시장내 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점용허가 대상에 추가함
(안 제2조)

- 나. 점용물의 종류별 점용료 산정기준을 규정한 별표에 「도로법 시행령」 별표 3과 다르게 또는 추가로 정한 사항만 규정함으로써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일과 본 조례의 개정·시행일이 달라 적용시점 차이에 따른 시민과 도로관리청의 혼란과 불편을 방지함(안 제3조)
- 다. 10면 이상 차량진출입로의 점용요율(0.02), 그 외 차량진출입로의 점용요율(0.016)로 구분,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도로법 시행령」과 서울시 조례와 같이 0.02로 통일하여 보도파손에 큰 영향을 주는 차량진출입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안 제3조 별표)
- 라. 도로관리의 효율성 확보 및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개정된 서울시 조례를 반영,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의 점용요율을 기존 0.01에서 0.007로, 노점은 기존 0.02에서 0.007로,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기존 0.02에서 0.01로 수정함(안 제3조 별표)
- 마.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 규정 관련 상위법령의 규정내용과 동일한 중복 조항을 삭제하고, 도로법령에서 점용료 감면에 대해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있는,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한 경우에 점용료감면 근거를 삭제함으로써 위법한 조례 규정을 바로 잡고자 함.(안 제7조)
- 사. 「도로법 시행령」 제41조의 점용료 반환 관련 신설사항을 반영하고 점용료 등 반환시 가산금 산정 이자 적용규정 근거 규정을 국유재산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바로 잡고자 함(안 제9조)
- 아. 수수료 감면 시 제7조를 준용토록 한 규정에서 제7조가 삭제됨에 따라 「도로법」 제68조를 준용토록 변경함(안 제11조)
- 자.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14.07.15.) 에 따른 조문정리 및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따라 정비함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가로환경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예관동), 문의전화:3396-6009, FAX:3396-8828, 메일:wonseok222@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1)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제24조제5항제9호”를 “제55조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제3호의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통시장 내 시설 등

5. 신·재생에너지 설비(단, 「서울시 에너지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에 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별표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1항 중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영 제28조”를 “법 제61조 및 영 제54조”로 하며, “법 제94조”를 “법 제72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영 별표3”을 “영 별표4”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42조제3호”를 “법 제68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66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영 제71조제5항과 제6항

에 따라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제3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38조"를 "법 제61조"로 하고, "부령 제42조제1항제2호"를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대해서는 법 제68조를 따른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 (제3조관련)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단위 : 원)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영 별표 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노점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전통시장의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3를 곱한 금액
2. 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 설치된 차양·비가리개시설·안내판 등 이와 유사한 시설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001을 곱한 금액
3. 영 별표3 제11호에 서 정한 점용물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전통시장내 시설 등			토지가격에 0.03을 곱한 금액
	신·재생에너지 설비(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비고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 구역에 상인 또는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점용료의 경우에는 점용료 80/100을 경감하되 2016년 12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물건·그 밖에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u>제24조제5항제9호</u>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광고탑,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u></p> <p>2. ~ 3.(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물건·그 밖에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u>제55조제12호</u>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u><삭제></u></p> <p>2. ~ 3.(현행과 같음)</p> <p><u>4. 전통시장 내 시설 등</u></p> <p><u>5. 신·재생에너지 설비 (단, 「서울시 에너지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에 한정한다.)</u></p>
<p>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u>도로법</u>」(이하 “법“이라 한다) <u>제41조제2항 및 영 제42조제2항</u>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u>별표의 기준에 따른다.</u></p> <p>제4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① <u>법 제38조 및 영 제28조</u>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u>법 제94조</u>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p>	<p>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u>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별표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p> <p>제4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① 「<u>도로법</u>」(이하 “법“이라 한다) <u>제61조 및 영 제54조</u>----- ----- ----- ----- ----- ----- <u>법 제72조</u> ----- -----.</p>

현행	개정안
<p>제6조(점용료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별표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u>영 별표3</u>의 점용료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p> <p>제7조(점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 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2.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4.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시설·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4.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p>제6조(점용료등의 조정) ①----- ----- ----- ----- ----- -----<u>영 별표4</u> -----.</p> <p><u>< 삭제 ></u></p>

현행	개정안
<p>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항제1호부터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하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 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 <p>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의 점용물의 종류란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점용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따라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계상된 면적 공사용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한의 면적 굴착부분은 굴착승인된 면적 <p>제9조(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만, 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p>	<p>제9조(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p> <p>①----- ----- -----, 법 제68조제3호----- -----.</p>

현행	개정안
<p>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u>법 제84조</u>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p>	<p>② <u>법 제66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영 제71조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u></p>
<p>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u>「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제3항</u>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p> <p>제10조(수수료의 징수) ① <u>법 제38조</u>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u>부령 제42조제1항제2호</u>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② <u>제7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u></p>	<p>③ ----- ----- ----- <u>「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2조</u> -----.</p> <p>제10조(수수료의 징수) ① <u>법 제61조</u> ----- <u>「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u> -----.</p> <p>② <u>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대해서는 법 제68조를 따른다.</u></p>

현 행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관련)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단위 : 원)
	점용 단위	기간 단위	
1~6. <생략>			
7.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통합 배포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 면적 1㎡	1년
	노점·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자동판매기, 상품 진열대		
			토지 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토지 가격에 0.02을 곱한 금액
			토지 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10. <생략>			
11.제1호 내지 제10호 외의 공 작 물·물 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점용 면적 1㎡	1년
	주택		
	기타		
			토지가격에 0.01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5을 곱한 금액

※비고

1.부터 8.까지 (생략)

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상인 또는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점용료의 경우에는 점용료 80/100을 경감하되 2016년 12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 정 안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관련)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단위 : 원)
	점용 단위	기간 단위	
1~6. <삭제>			
1. 영 별표 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 면적 1㎡	1년
	노점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전통시장의 상품 진열대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3를 곱한 금액
8~9. <삭제>, 10<현행유지>			
3. 영 별표 3 제11호에서 정한 점용물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점용 면적 1㎡	1년
	주택		
	전통시장내 시설 등		
	기타		
			토지가격에 0.01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3을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비고

1.부터 8.까지 삭제

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상인 또는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점용료의 경우에는 점용료 80/100을 경감하되 2016년 12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